

#### 4. 금융투자협회 규정

- 가.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(인수업무조서 작성 주체 확대)
- 나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(상장클래스 전환 변경절차 적용 배제)
- 다.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(파생상품시장 야간거래 도입 및 유로스톡스 50 선물 상장폐지 관련 사항 정비)
- 라.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(주권상장법인의 분기배당 관련 개정내용 반영)

## 4. 금융투자협회 규정\*

### 가.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(2025/6/12 개정 · 2025/9/3 시행)

#### 1) 개정 이유

- 금융당국의 'IPO 주관업무 개선방안'(2024.5.9.)의 후속조치로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
  - 금융투자업규정 제4-19조 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개정

#### 2) 주요 내용

- 인수업무조서 작성 주체 확대(제15조 제3항 · 제8항)
  - 금투업규정 개정에서 인수업무조서 작성 주체를 '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'에서 '주관회사 및 인수회사'로 확대
  - 인수업무규정도 동일하게 인수업무조서 작성 주체를 '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'에서 '주관회사 및 인수회사'로 개정
- 주관회사의 기업실사 기준 명확화 등(제15조 제3항 · 제8항)
  - 금투업규정에서 '협회가 정하는 기준'에 따른 기업실사 의무를 신설
  - 기존 인수업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업실사 기준(제15조 제8항)의 근거로 해당 조항을 인용
    - 인수업무규정상 기업실사(제15조 제8항)은 2024년 6월 28일에 신설(당시 금투업규정 개정을 염두에 두고 반영)
  - 금투업규정에서 기업실사 주체를 주관회사로 정함에 따라, 인수업무조서와 마찬가지로 인수업무규정도 기업실사 주체를 기존 대표주관회사에서 주관회사로 확대
    - 다만, 주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인수회사의 경우 기업실사 의무를 적용하지 않음

\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## 나.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(2025/6/20 개정 · 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금융위의 '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'(2024.1.3.)의 일환으로 상장공모펀드 법제화가 추진되면서 '일반 공모펀드의 상장클래스 신설을 통한 상장거래 서비스'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 완료
  -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기존 (장외)공모펀드의 거래소시장 상장 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공모펀드 개념 법제화 추진
  - 기존 일반 공모펀드(종류형펀드)에 상장클래스를 신설하고 해당 클래스를 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여 ETF와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토록 하는 내용
- 혁신금융서비스 신청내용에 따라 운용사는 해당 펀드 기존 투자자들에게 클래스전환권을 부여함에 따른 적용예외를 적용하기 위함
  - 기존 비상장클래스(A, Ae, C, Ce클래스 등) 보유자가 상장클래스(X클래스) 신설 전 전환신청기간에 상장클래스로의 전환 신청시 추가 비용부담 없이 사전고지된 특정일(전환예정일)에 상장클래스(X클래스) 취득
  - 전환권 행사로 상장클래스를 취득하는 것은 상장클래스 발행시장 업무로서 AP증권사만 의무적으로 진행하며, AP증권사 아닌 판매회사의 투자자는 판매회사 변경 후 전환 신청
  - 상장클래스로의 전환을 위해 판매회사를 변경한 투자자가 전환 신청을 철회하거나 상장클래스 미신설(또는 미상장) 되는 경우 '90일내 재변경 제한' 적용 제외 필요
    - 판매회사 변경효력발생일로부터 90일 미경과시 원칙적으로 판매회사 재변경 불가(現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」 제40-2조 제1호)

### 2) 주요 내용

- 변경절차 적용배제(제40-2조 제1호)
  - 상장클래스 전환을 위해 판매회사를 변경했으나 상장클래스가 미신설(또는 미상장)된 경우를 신설

## 다.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(2025/6/2 개정 · 2025/6/9 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한국거래소(KRX)의 파생상품시장 자체 야간거래제도 도입 및 유로스톡스 50 선물 상장 폐지 관련 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· 시행세칙」 개정 사항을 설명서에 반영하기 위함

## 2) 주요 내용

- 파생상품시장 야간거래 도입 및 유로스톡스 50 선물 상장폐지 관련 사항 정비
  - 거래시간 구분 및 거래일 개념 신설
    - 호가는 접수된 해당 거래시간 동안만 유효
    - 정규거래시간(당일 8시 45분부터 당일 15시 45분까지)과 야간거래시간(전일 18시부터 당일 6시까지)으로 구분
    - 당일 야간거래 개시 시점부터 다음날 야간거래 개시 시점 전까지
  - 야간거래의 가격제한 비율, 호가수량한도 반영
  - 위험고지서에 야간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추가
    - 야간거래의 낮은 유동성과 높은 변동성, 거래소의 시장조치 가능성 및 가격정보 활용 제약 등

## 라.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(2025/6/2 개정 · 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주권상장법인의 분기배당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(2025.1.21.)으로 이를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기 위함
  - 분기배당 기준일을 배당액결정 이후 지정 허용
    - (기존) 先 배당기준일(분기말) 지정 → 後 배당액 결정
    - (개정) 先 배당액 결정 → 後 배당기준일 지정(이사회 또는 정관에서 결정)
    - 결산배당에 대해서는 '23.1월 법무부의 「상법」 유권해석을 통해 절차개선 既완료
    -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할 수 있음
  - 분기배당 지급일 변경: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(기존 20일)

### 2) 주요 내용

- 투자신탁 해지 시 미수금 채권 등의 평가 중 수령일이 확정되지 않은 미수금 채권의 계산기간 종료일 중 일부를 개정 (V-3)
  - 미수배당금(확정 분기배당) 계산기간 종료일
    - (기존)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0일 → (개정)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
  - 미수배당금(미확정 분기배당) 계산기간 종료일
    - (기존) 배당금 지급기준일로부터 65일 → (개정) 3월·6월·9월 말일로부터 45일+1개월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